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4.9.5(목)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5.(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3. 김영록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8.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임시회 제1차(2024. 9. 5.)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의결(의안번호 제637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영록 의원)

가. 제안이유

○ 창원시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건립기금 설치와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1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등 생략

4. 전문위원 검토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창원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시금고에 별도 계좌 설치로 기금을 예치하여 관리·운용,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함

□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창원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시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 제정안의 주 내용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두어 창원시 시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함

○ 참고 1과 같이 지자체 74개소에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기금 마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참고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74개소)

구분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광역자치단체(2)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72)	서울(13)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부산(7)	동래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대구(3)	남구, 동구, 수성구
	인천(1)	미추홀구
	광주(1)	북구
	대전(4)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
	울산(2)	남구, 중구
	경기(12)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평택시, 포천시
	강원(5)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 춘천시
	충북(3)	옥천군, 청주시, 증평군
	충남(5)	금산군, 서산시, 서천군, 논산시, 아산시
	전북(1)	익산시
	전남(8)	강진군,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순천시, 완도군, 장흥군, 영암군
	경북(4)	상주시, 울릉군, 울진군, 문경시
	경남(3)	통영시, 함안군, 합천군

참고2 창원시 청사 현황

*출처: 자치행정과

구 분	연면적(㎡)	층수	건축년도	사업비	시설물 안전등급	비고
합 계	32,929.27㎡					
본관동	12,676.87 (4층 증축)	4/1	1980 2005		B	구.창원시
의회동	6,080.05	4/1	1990		B	지방자치출범
제1별관동	3,418.07	3/1	1994		B	도농통합
제2별관동	4,093.96 (증 2,013.62)	4	2010 2016	36억 30억	A	통합창원시 출범
직장보육동	568.84	2/1	1998		-	
주차빌딩동	5,835.57	3	2002		A	
기계식 주차타워	228.74	1	2020	20억	-	
기타(경비실)	27.17	1	2008		-	

참고3 창원시 청사 개보수 현황(최근 5년간)

*출처: 자치행정과(2024.6. 기준)

구 분	공사명	공사금액	비고
2020년	시청사 스마트오피스 조성공사	185,744,900원	
	시청사 본관동 4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72,941,050원	
2021년	시청사 의회동 옥상 공사	374,239,580원	
2022년	시청사 의회동 3층 노후창호교체 공사	163,314,390원	
	시청사 제1별관 외벽개선공사	210,749,000원	
	본관동 동편 2~3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195,269,710원	
2023년	시청사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194,880,000원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공사	300,000,000원	
2024년	시청사 교통체계 개편 공사	900,000,000원	
	시청사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143,430,140원	
합 계		2,840,568,770원	

○ 참고 2·3과 같이 현 청사는 구 창원시 인구 30만 기준으로 건립된 이후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별관 증축을 하게 되었고 청사 노후화 및 부지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불편, 주차 공간 부족, 증축 한계로 인해 부서 신설시 업무 공간 확보 곤란 등 청사 유지 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

○ 또한, 현 청사는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주민편익시설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여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창원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비용추계서[붙임]에 따르면 건립에 필요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의 재원으로 5년간 매년 20억 6천여만 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 예산을 조성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차가 되는 2029년에는 기금의 존치 연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 및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편리성 및 상징성 등 제반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신청사가 건립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1. 「비용추계서」
2. 「관계법령」

붙 임 비용추계서

[별지 제2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안 제3조(기금의 조성)

나. 안 제4조(기금의 용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창원시 시청사 건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입	10,288,000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세출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다. 재원조달방안

○ 창원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 기부금

○ 기금의 운용수입금

○ 그 밖의 수입금

3.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계
세 입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10,288,00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기금운용수입금 ('24년 이자 2.88%/년)		57,600	57,600	57,600	57,600	57,600	288,000
세 출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위원회 운영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재원 조달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10,288,000**
의존 재원	소 계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2,057,600	10,288,000
	전입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수입금(이자)	57,600	57,600	57,600	57,600	57,600	288,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질의·답변 요지** : 기재 생략

6. **토론 요지** : 기재 생략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 없음